
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 2019. 2. 11.(월) 총 7매(본문4, 참고3)		
담당 부서	간선도로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헌, 사무관 최규용, 주무관 김소라 • ☎ (044) 201-3907, 3893	
	도로운영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정기, 사무관 김정환, 주무관 박소연 • ☎ (044) 201-3912, 3920	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 10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차량·속도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·안전위주로 탈바꿈 된다

### 「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」와 「교통정온화 시설 설치·관리지침」 제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「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」와 「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제정하고, 지방국토관리청,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오는 1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.

\* (시간/장소) '19.2.12(화) 13시30분/ LW컨벤션(서울역 인근), 약 150명 규모

- 기존의 자동차 통행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에서,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도로설계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「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」를 제정하였다.
  - 그간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,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.
  -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방식으로 인하여, 도시지역에서 시민 생활중심의 도로,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\* (서울시)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부를 보행자들의 공간으로 활용(차량속도저감 필요) 가능하나 주간선도로(설계속도: 80km/h이상)로 규정되어 계획 추진 불가

○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하였다.

□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,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.

\* (기존) 도시지역 ⇒ (개선)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으로 세분화

구분	주거지역	상업지역	공업지역	녹지지역
특성	주민 출퇴근, 근린생활 <b>통행공간·생활환경 보존 필요</b>	유출입 교통량, 대중 교통관리시설이 많아 <b>접근관리 중요</b>	화물차량 등 <b>대형차량</b> 을 위한 교차로 및 차로구성 필요	녹지 및 보행자 위해 <b>교통량 최소, 낮은 통행속도</b>
적용	보도와 차도 사이 <b>녹지공간 조성,</b> <b>돌출형 보도 설치 등</b>	복합용도 <b>주정차공간,</b> 버스 승하차 <b>대기공간</b> 확보	대형화물차 폭 고려, <b>차로폭 및 회전반지름</b> 결정	<b>교통정온화 시설, 쉼터</b> 조성, 녹지공간 일부로 보도설계

○ 또한,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,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,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소개하고 있다.



\* (파클렛)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간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,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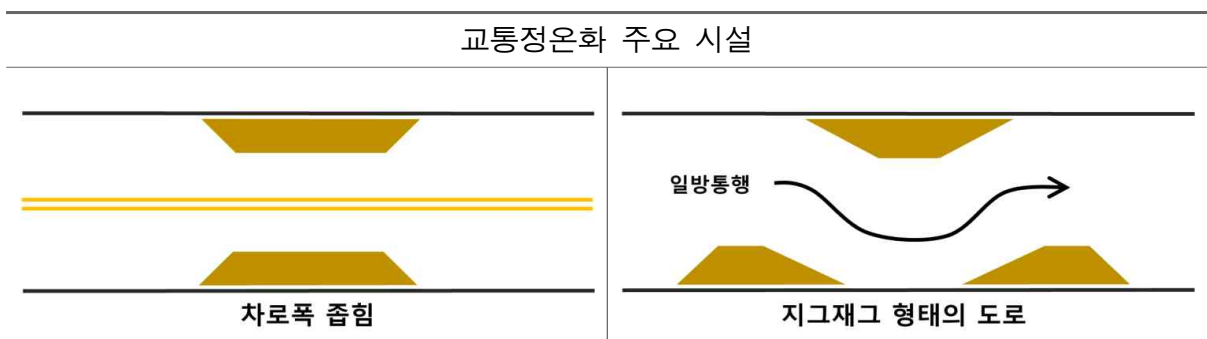
\* (옐로 카펫)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노란색으로 도색한 보행자의 안전지대

\* (버스곶) 정류장 앞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한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

-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‘교통정온화 시설’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,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,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「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」도 제정하였다.
- “교통정온화(Traffic Calming)”란, ‘교통을 조용히 시킨다, 진정시킨다’라는 의미로,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.
  - 교통정온화 시설은 ‘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으며, 해외에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.
  - 국내에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, 「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을 ‘교통안전 종합대책(2018)’의 세부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였다.



-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에는 ▲지그재그 도로, ▲차로 폭 좁힘, ▲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, ▲차량진입 억제시설, ▲소형 회전 교차로, ▲과속방지턱, ▲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.





- 특히, ‘지그재그 도로’, ‘차로 폭 좁힘’ 등 일부 교통정온화 시설도 국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사례\*가 있으나, 적용범위,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
\* 지그재그 도로(서울 덕수궁 돌담길), 차로 폭 좁힘(서울 성북구) 등

-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, 대표적으로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,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, 상업지 등,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“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,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「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」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, “교통정온화시설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하는 한편, 전국의 주요 도심지,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, 이면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최규용 사무관(☎ 044-201-3907) 또는 도로운영과 김정한 사무관(☎ 044-201-39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						
제1장 총칙	(목적 및 적용범위) 도시지역도로 가이드 적용 범위, 목적 명시												
제2장 도시지역도로의 구분	(새로운 도로 구분 체계 제시) - 도시지역도로 1등급 : 기존 주간선도로/광로 - 도시지역도로 2등급 : 기존 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/대로 - 도시지역도로 3등급 : 기존 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/중로 - 도시지역도로 4등급 : 기존 국지도로/소로												
제3장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와 선형	(새로운 설계속도 기준 제시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설계속도(km/h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도시지역 도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간선도로/광로 6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/대로 5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/중로 4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등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지도로/소로 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	설계속도(km/h)	도시지역 도로	1등급	주간선도로/광로 60	2등급	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/대로 50	3등급	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/중로 40	4등급	국지도로/소로 30
구 분		설계속도(km/h)											
도시지역 도로	1등급	주간선도로/광로 60											
	2등급	주간선도로, 보조간선도로/대로 50											
	3등급	보조간선도로, 집산도로/중로 40											
	4등급	국지도로/소로 30											
제4장 도시지역 이용 특성을 고려한 횡단구성	(지역구분 세분화) 도시지역⇒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												
제5장 보도 및 차도	(보행자 중심) 보도의 기능 강화·확폭, Road Diet, 이용자 편의시설 적극 도입												
제6장 평면교차로	(교차로 공간 효율성 증대) 초소형 회전교차로 등 적극 도입												
제7장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	(새로운 시설 적극 도입) 그늘막, 파클렛, 옐로카펫 등												
제8장 교통정온화시설	(정온화시설 도입) 차도폭 좁힘, 지그재그형 도로 등												
제9장 포장	(특수포장 도입) 특수포장, 노면처리기법 등												
제10장 배수시설	(환경 중심) 환경친화적 노면배수시설 도입												

## 참고 2      교통정온화 시설 종류

- ① (지그재그 도로) 시각적으로 도로를 지그재그로 굽혀 주행경로가 변경되도록 유도하여, 속도저감 및 교통량억제 효과를 가지는 시설
- (설치방법) 속도가 30km/h이하가 되도록, 통과차량의 회전반지름을 감안하여 기하구조 제원을 결정

< 지그재그 형태 도로 개념도 >



- ② (차로 폭 좁힘) 차로 폭 또는 교차로의 폭을 물리적, 시각적으로 좁혀,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
- (설치방법) 보도연석 확장, 노면표시 등(차로폭 좁힘)과 교차로에 보도 부분 돌출 및 말뚝, 식재 등을 설치(교차로폭 좁힘)

\* 단, 통행방법지시와 관련한 교통안전표지를 적절히 설치해야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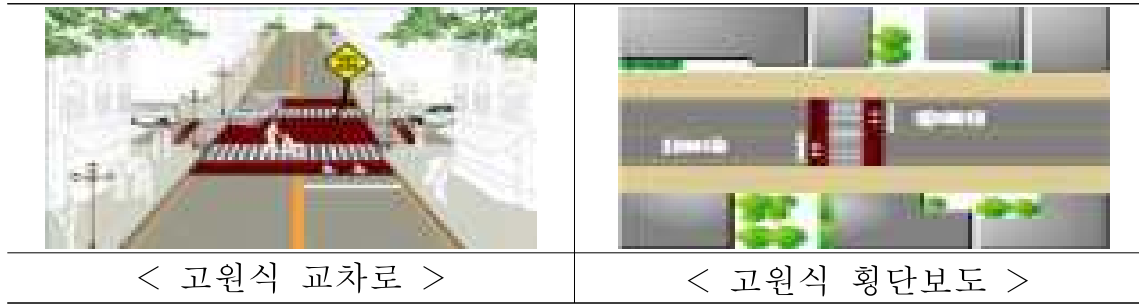
< 차로 폭 좁힘 >

< 교차로 폭 좁힘 >

- ③ (고원식 교차로·횡단보도)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여,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

- (설치방법) 횡단보도는 보도와의 단차를 2cm 이하로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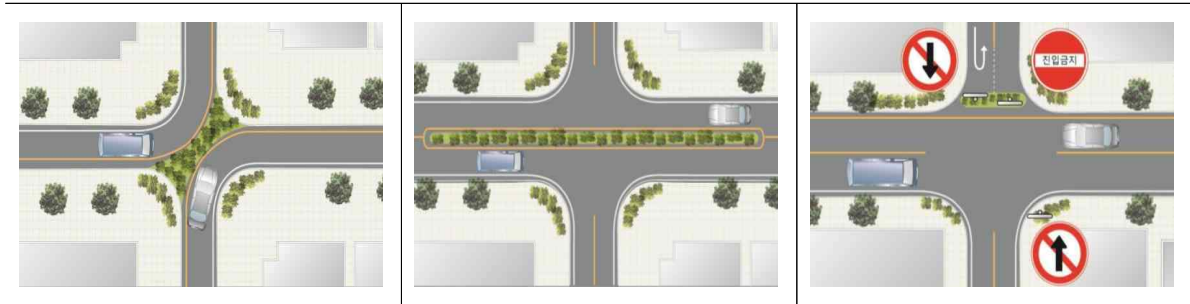
\* 점자블록이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를 고려함



④ (차량 진입억제시설) 교차로에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시설

- (설치방법) 유턴시설, 안내표지,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효과를 높임

< 진입억제시설 개념도 >



⑤ (소형 회전교차로) 차량 속도저감 및 교통량 억제를 위해, 도로 여건 및 기하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회전교차로

- (설치방법) 진입차로 수, 설계기준자동차, 설계속도를 결정하여, 지름, 차로 폭, 회전차로 수를 결정

\* 회전교차로 설치시, 「회전교차로 설계지침(2014, 국토부)」에 따라 설치

< 초소형 회전교차로 개념도 >



⑥ (기타시설) 포장면 표면처리(노면 요철), 과속방지턱, 엇갈림 교차로 등 속도저감 시설